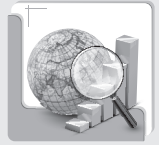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 법령질의



대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Q

저희 대학교에서는 신입생 선발을 위하여 입시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걸쳐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두루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으로부터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만약 입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면 신입생 선발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검토사항

- 2014.8.7.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는 우선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목적으로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그리고 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처리하는 업무의 종류와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 중 어떤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상황에 따라 나누어 검토해 보아야 한다.
- 나아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현행 법률은 과거와 달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어떠한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답변내용

- 2013.8.6. 개정되어 2014.8.7.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4종의 고유식별정보 중 특히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상 구체적 처리근거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중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까지 DB매칭키 등으로 남용될 뿐 아니라, 관리가 소홀하여 유출도 매우 잦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key값으로 하여 보이스포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 속출
 -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금지를 원칙으로 함
- 대학교가 입시와 관련하여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는 경우 관련되는 근거 법령으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있다.
 - 교육부장관,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 제42조의2에 따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무

-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 그러므로 대학교가 입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다만 이 규정을 해석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하며, 불가피성이 없다면 비록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 입학원서 접수시점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수행에 “불가피”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 가능
- 그러나 예를 들어 합격자나 입학포기자 중 동명이인이 존재할 경우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DB kdy값으로 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요컨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 법령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특정 업무 처리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비록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불가피성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 나아가 입시업무 수행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불가피성이 없는 경우 어떤 대체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색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은 성명, 지원학과, 출신학교, 수험번호 등의 정보를 결합하면 될 것이다.
-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근거 및 불가피성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상황에서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 하더라도 2016.8.6.까지는 전면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하기 전에도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보관하거나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도 불허

- 결론적으로 입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지 여부를 업무의 단계별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없이도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비록 입시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 제42조의2에 따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무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략)